

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05. . .
제 출 자 구 미 시 장

□ 개정이유

-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들의 건강과, 보람있는 노후생활 창조 및 여가 공간시설 확충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신설
- 시민복지회관소속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
- “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”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「도시 보건지소」운영 시범자치단체 선정으로 인동보건지소를 도시보건지소로 전환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사업소신설 :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
- 민 간 위 탁 : 근로자종합복지관
- 도시보건지소
 - 명 칭 : 인동보건지소
 - 소 재 지 : 구미시 진평동 985-35번지
 - 존속기간 : 2007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

□ 참고사항

- 경북도 자치행정과-3787(2005.4.26)호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관련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 통보
- 경북도 자치행정과 - 5395('05.6.23)호의 구미시 기구 및 정원 승인
-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- 2041(2005. 8.19)호의 「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」운영인력 보강지침 통보
- 지역보건법 제10조(보건지소의 설치) 및 동법시행령제8조

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법 제104조제1항과 「지역보건법」 제7조,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,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를, 읍·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. 다만,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19조제1호중 파목을 삭제하고, 동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

- 가. 노인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
- 나. 노인회지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
- 다. 경로식당 운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
- 라. 노인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
- 마. 노인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
- 바.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및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
- 사. 노인후원회 및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
- 아. 노인 물리치료 및 양·한방 진료에 관한 사항
- 자. 노인 재가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

별표 2중 구미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란 다음에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	구미시 원평동 460-1번지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한시기구 경과조치) 제10조제1항의 규정으로 시행하는 인동보건지소는 2007년 9월 30까지 존속한다.
- ③(다른조례의 개정) 구미시의회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제2호중 “체육시설관리사무소”를 “체육시설관리사무소, 노인 종합복지회관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(설치) ①법 제104조제1항과 「지역보건법」 제7조,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,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를, 읍면동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.	제10조(설치) ①법 제104조제1항과 「지역보건법」 제7조,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,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를, 읍·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. 다만,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제19조(소관사무) 사업소별 소장이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구미시민복지회관 가. 타.(생략) 파.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하. (생략) 2. 13. (생략) <u>< 신 설 ></u>	제19조(소관사무)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가. 타.(현행과 같음) <u>< 삭 제 ></u> 하. (현행과 같음) 2. 13. (현행과 같음) 14. <u>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</u> 가. <u>노인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</u> 나. <u>노인회지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</u> 다. <u>경로식당 운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</u> 라. <u>노인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</u> 마. <u>노인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</u> 바. <u>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및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</u> 사. <u>노인후원회 및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</u> 아. <u>노인 물리치료 및 양·한방 진료에 관한 사항</u> 자. <u>노인 재가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</u>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
【별표2】 사업소의명칭 및 위치 <table> <tr> <th>사업소명</th><th>위 치</th></tr> <tr> <td>구미시민복지회관 ~ 구미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</td><td>(생 략)</td></tr> <tr> <td></td><td><u>< 신 설 ></u></td></tr> </table>	사업소명	위 치	구미시민복지회관 ~ 구미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	(생 략)		<u>< 신 설 ></u>	【별표2】 사업소의명칭 및 위치 <table> <tr> <th>사업소명</th><th>위 치</th></tr> <tr> <td>구미시민복지회관 ~ 구미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/tr> <tr> <td>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</td><td>구미시 위평동 460-1번지</td></tr> </table>	사업소명	위 치	구미시민복지회관 ~ 구미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	(현행과 같음)	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	구미시 위평동 460-1번지
사업소명	위 치												
구미시민복지회관 ~ 구미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	(생 략)												
	<u>< 신 설 ></u>												
사업소명	위 치												
구미시민복지회관 ~ 구미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
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	구미시 위평동 460-1번지												